

書誌統整事業論 (五)

劉 · 永 · 玠

(2) 書誌統整事業의 內容

前回 4)의 (1) 「書誌統整의 類型」에서 筆者는 그 類型을 文獻機構 一般에 共通의 으로 一貫된 作用過程에 着眼하여 그것이 展開되어 나아가는 序次에 따라서 逐次的으로 檢討 吟味하는 方法의 可能性을 提示하고, 例示的인 11個項目을 摘示羅列하여 보았었거니와 ⁽³¹⁾ 이번에는 이들에 對한 그동안 再檢討의 結果 그들 序次上 한 두가지의 變動이 있게 되었다는 點을 除外하고, 그대로 그들 類型에 對한 個個項目의 內容에 對한 穿鑿을 加하여 보려 는 것이다.

① 첫째로 「納本制度를 통한 版權의 保障과 書誌統整을 爲한 基礎資料의 自動的인 入手提供」이라는 點에 對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元來 出版에 關하여는 出版警察上 檢閱主義(許可主義 : Präventivsystem)와 自由主義(Repressivsystem)로 兩立되어 왔었던 것인데 이들에 있어서는 늘 納本制度라는 것과 密接한 關連性을 갖게 되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의 關心主題가 되어있는 納本制度에 對하여 말한다면, 過去에 있어서 처럼 이의 目的을 오로지 言論·出版의 團束에만 觀察點을 들것이 아니라, 이 制度의 根本趣旨을 우리는 좀더 文化的인 意義에서 찾아 보는 것이 正當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即 그것은, 精神的作用의 所産인 文化財로

서의 新聞·雜誌와 單行本等은 그것이 如何한 類型의 것이든 間에 한國家內에서 적어도 그어느 한곳에서 만은 이들 資料가 網羅的으로 保有케 되므로써, 그들 資料의 蓄積을 바탕으로 文化的 傳承과 未來에 의 보다 새로운 視野擴大와 展望을 可能케 하는 契機를 造成하여 주는데 그의 意義와 使命이 있을 것이라는 點이다.

如斯한 意味에서 各國에 있어서의 出版物法과 納本制度 및 著作權法에 關한 立法例의 始源을 回顧한다면, 첫째로 그것은 1831年의 出版에 關한 白耳其 布告令及 1847年의 同改正令에서 그의 嚆矢를 찾아 볼수 있지 않을가 여겨진다. 이에 뒤이어 王國領域內에 의 發刊된 出版物은 最少限 一部만은 大英博物館圖書館에 義務的으로 納付하여야 한다고 하는 義務納本制와 Oxford, Cambridge兩大學 및 Edinburgh市辯護士會館 그리고 Wales의 國立圖書館에 對한 任意納本制를 規定하였던 英國出版法의 制定과 또한 1874年의 獨逸帝國出版法(Das Reichsgesetz über die Presse)에서의 定刊物(Periodischen Druckschriften)에 對하여서만 賦課한 納本義務의 規定, 더 나아가서 1881年 佛蘭西의 「出版自由에 關한 法律」(Loi sur la liberte de la presse)에서의 製本된 2部를 同國 內務省 또는 地方廳에 의 納本義務를 制度化한 以來로 이와같은 納本制度는 오늘날의 文化諸國이 認定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美國에서의 本制度의 立法例를 찾아 본다면, 그것은 1909年의 法制定과 그後の Amendments 및 1949年 第81次 議會에서 可決된 公法 第84號에서의 著作物登錄規定 內容에 依한 著作權의 保護와 牽連시켜 이 權利의 保護를 規定하였었는데 거기에서는 如斯한 保護를 願하는 者의 保護申請을 2부의 著作物 納本履行을 要件으로 規定하여 놓으므로써 그 나라에 있어서의 書誌統整資料의 自動的인 入手를 爲한 素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 內容을 좀더 檢討하여 본다면 그것은 大略 다음과 같을 것이다. 卽 發刊 또는 未刊行된 著作物 및 그의 更訂版에 對한 著作權은 生存中 및 死後 28年間 保護되고 1회에 限하여 다시 그 期間이 更新⁽³³⁾ 延長될 수 있다는 것이다. 著作權의 登錄은 (Registrations for published and unpublished domestic works, renewals, searches ……) 保護를 받으려고 하는 單行本, 樂譜 戲曲作品, 地圖等을 各2部式, 그리고 映畫 film이나 定刊物 乃至는 續刊物은 各1部式을 送納하므로써 可能하게 되는 것인데, 이들 資料는 窮極에 가서 登錄局(Register of Copyrights)으로부터 國會圖書館 收書部로 移管되던가, 또는 그 性質에 따라서는 卽 寄託機關 아니면, 國內外의 資料交換을 爲하여 Exchange and Gift Division, L. C.로 넘겨주게 된다.

登錄이 許容되는 資料의 範圍은 圖書(Books)를 비롯하여 商業宣傳用 印刷物과 商標(Commercial prints and labels), 禮賀狀(Greeting cards), Pamphlets, leaflets, 新聞雜誌의 寄稿記事, 講演(lectures, sermons, addresses), 寫眞類, 歌劇作品, 圖畫印刷物, 플라스틱作品(Plastic works of

a scientific or technical character), 美術作品, 宣傳美術, 寶石裝飾意匠(Jewelry), 立體作品(3-Dimensional works) T. V. film 等等 實로 廣汎한 登錄對象을 갖고 創發的인 文化作用的인 所産에 對한 權利를 保護하고 있음을 斟酌해 하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아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著作物과 特許物의 限界를 어느 規準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가 저으기 問題될 것일 뿐더러, 나아가 著作權登錄局과 特許局의 管掌事務 또한 重複되어질 可能性과 이가 가져올 混亂이란 적지 않을 것이라는 點이다. 1956年度를 基準하는 다면 이 나라의 年間 登錄件數는 單行本이 約 5萬5千件, 定刊物이 約 6萬件, 音樂資料가 約 6萬件 및 其他를 合하여 都合 約 23萬件에 達하고 있다⁽³⁵⁾는 것이다.

그러면 倣近한 先例로서 隣國 日本의 境遇는 어떠한가? 그것은 日本의 國立國會圖書館의 納本制度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卽 거기에서는 1948年 2月 9日字로 公布된 法 第5號 및 其翌年 6月 6日字의 法 第194號로 改正公布된 「國立國會圖書館法」에 依據하여 同國에서의 納本制度를 法定納本과 任意指定納本の 兩體制로 規定하고 있다. 그 法制度와 이의 實際的 運用面의 大綱을 살펴본다면, 첫째로 公共機關이 發刊하는 資料는 30~50部(法24條)로 되어있고, 其他의 新版本에 對하여는 各1部式을 納本하게 되어있으며(法25) 둘째로 正當한 理由없이 納本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는 者에 對하여는 當該圖書 小賣價의 5倍以下 相當額의 過料規定(同法 25條의 2)이 있으며 그 納本目的은 어디까지나 文化財의 蓄積과 그의 廣汎且 圓滑한 情報流通에 資함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意味

에서 그것은 지난날의 帝國主義 內務省時代의 取締用 納本の 趣旨와 根本的으로 差異가 있게 되는것이다. 또한 그 納本資料에 對하여 論之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그 出版物의 內容如何를 莫論하고 初版本 및 改訂版本中에서 完全한 最良本 1部式을 版權紙面所記의 發行日字로부터 30日以內에 同館 受入整理部 收集課에 納付하게끔 되어있다. 뿐더러 그 納本代金の 處理 問題에 있어서도 納本에는 既述한바와 같이 有償納本과 無償納本の 2種이 있어 그 어느側을 擇하는가는 純全히 納本者의 自由意思에 依存하게 되는 것이지만 有償納本の 境遇에 있어서의 代金調整과 清算에 關하여는 關係民間人을 加한 「代償金清算委員會」에 依하여 一定한 基準에 따라서 處理하되, 普通은 定價의 4~5割引을 標準으로 잡고 이에다 若干의 所要費用을 加算하여 支拂되게끔 마련하고있다. 納本節次또한 各納品者가 個別的으로 行動하는번거러움을 避하기 爲하여, 納品에서 代金受領에 이르기까지의 一切의 節次를 「日本出版取次協會」(出版取次懇話會의 後身)에다 各出版社가 委任하므로써 이로 하여금 一括代付케 하고 있으며 本協會로서는 內部的으로 同協會員인 東京出版販賣株式會社와 日本出版販賣株式會社の 兩社로 하여금 半年間式 交代로이 納本事務를 處理하도록 또 다시 委任하고 있는데 이들은 每週 1回式 各發行所의 刊行物을 前示 日販取次協會로 收合搬入하여 여기에서 國會圖書館으로 納本하고 있는 것이다. 新聞·雜誌와 같은 定期刊行物의 境遇에 있어서는 그의 有償·無償別을 指定한다음 各己 發行者가 現品을 國會圖書館으로 直送納品하게 되어있다. 한가지 더

附言한다면, 同法이 本制度의 義務履行을 怠慢한 者에 對하여 罰則을 두고 있는것은 既述한바와 같으나, 이는 말하자면 書誌事業을 爲한 하나의 強制的 統整方策이라 할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現行中인 納本制度의 體制와 그의 實際의 運用의 現實은 어떠한가? 이에 對하여는 現實參酌을 通한 各自대로의 結論을 얻을수 있을 것이며, 또한 前述하여 온바와 같은 外國의 先例에서 우리制度의 좋은 展望을 爲한 價値있는 어떤 示唆를 얻게 될것이라고 생각된다.

② 둘째로 「國內外的 資料生産에 關한 統計의 作成 및 이를 通한 現況提示와 資料源에 關한 書誌的 情報提供 Service」라는 面을 想定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할것도 없이, 必然的 因果律에 依하여 規律되는 自然現象과는 달리 根本的으로 人間의 自由意思에 起因하는 社會現象의 發生은 偶然的, 確率的(Casual and Probable)인 蓋然律에 依存하게 되는것이므로 如斯한 社會現象을 支配하는 法則을 究明하려는 社會科學에 있어서는 오로지 統計의 方法을 通하여서만 그의 認識이 可能하다 하겠다. 換言하면 近代科學의 特徵은 그의 實證性에 있는것이며 特히 社會科學研究上의 實證의 方法으로는 自然科學上에서의 實驗의 方法과는 類달라서, 그 社會的現象이란 것이 어떠한 管理된 條件下에서의 實驗이란 것을 困難 乃至는 不可能케하므로써 그 어떤 確實性위에서 單一의 個別現象을 取扱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이領域에 있어서는 如斯한 個別現象의 不確實性을 超克하기 爲하여 同一範圍에 屬하는 여러 個別現象 即 集團現象을 確率의 方法에 依據

하여 把握하게 됨에 이르렀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接近方法은 非單學問上에서만 專擅의·獨占의으로 專用됨에 끝이지 않고, 널리 社會的 實際面에서도 廣泛且頻繁히 援用되며 이리하여 事實의 現在的觀察에만 끝이지 않고, 멀리 過去의 沿革의 足跡과의 關連에서 將來에 對한 豫想을 通하여 正確한 現實把握과 未來에 對한 展望을 科學的으로 豫測하므로써 一連의 有機的인 認識可能性을 우리에게 提與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의 社會現象으로서의 圖書館의 管理·運營現象, 特히 其中의 한局面인 書誌統整事業이라고 하는 하나의 社會現象을 爲한 現實態把握의 推進과 未來에의 展望을 爲한 示唆的, 指針資料의 役割을 하여주는 統計的方法和 資料는 國內外 또는 現在와 過去에 있어서의 情報生産源의 廣泛한 收集·蓄積과 이들의 流通狀況에 對한 資料의 蒐集分析 및 綜合的인 結論을 把握 提供하므로써 그들 情報資料가 如何한 方法和 型態 乃至는 系統으로 生産·分配·運用流通되며 消耗廢棄되고 있으며, 또한 되어질 것인가를 現象的으로 뿐만 아니라 價值的으로도 判斷하여 書誌의 機能作用上的 改善을 爲한 確率的·蓋然的인 示唆을 주기 爲하여 採擇됨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抽象論的前提를 갖고 情報資料 生産源과 그의 流過程 및 終局的인 廢棄段階로 一貫되는 現象에 對한 統計의 把握을 通한 現況提示와 資料源에 關한 書誌의 情報提供 Service에 對한 좀더 具體的인 內容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가) 먼저 統計資料의 作成과 그를 通한 現況提示에 關하여 말한다면, 우선 여

기에서는 「資料」를 中心으로 하여 그의 生産過程·分配流通過程·消費過程에 着眼하여 이를 考察할 수 있는 同時에 그 資料를 다루는 「사람」을 中心으로 하여 우리는 또한 이를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이와같은 方法은 우리로 하여금 國內外生産의 資料를 中心으로한 統計事項, 即 主題部門別(10~1000區分), 言語別·地域別·判型形態別·翻譯資料別·時差別·用紙의 生産·分配·消費 등에 關한 事項(規格·質量·單價等)·印刷關係·裝幀·製本關係·資料利用頻度率(例컨대 Best-seller에 關한것도 包含될수있다)·資料輸出入關係·P. R. 關係·資料에 對한 寫真複寫關係·官廳出版物關係, 資料의 除籍과 古本市場의 實況 등에 對한 各種의 統計的接近을 可能케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람」을 中心으로 하는바, 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研究調查發表者 乃至는 著者別·從事分野別·出版者·發行者의 發行企劃性向 및 資金回轉率關係(販賣界動向·輸出入高·去來高別)·利用者·購賣者의 成層別(讀書傾向·廣泛·精緻한 讀書調查包含)·各級圖書館의 各種運營狀況統計(編成豫算·執行豫算關係 包含)·各機關·社會團體의 圖書購入豫算狀況·藏書構成狀況·國民所得과 文化費 支辨關係·藏書狀況·文化財生産과 運用에 關한 授賞·推薦關係 등에 對한 具體的인 實情을 또한 把握케 하여줄 수 있다.

(나) 그 다음으로는 前示한바 統計作成과 더불어 이에 相應하는 可能한 限의 具體的인 目錄(List) 또는 名簿(Directory)가 作成提示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即 이미 常識화된 일이지는 하나, 年間發行的 圖書와 雜誌目錄을 作成供與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最少限 書誌의 四大要素의 表示가

必須인 것이며, 特히 後者의 境遇에 있어서는 現刊·廢·休刊紙別로 目的·主題·標題·創刊年度·刊行地住所·刊行者·刊別(頻度數)·標題의 變動事項을 包含시켜야 할 것이다.

記錄된 文化財인 圖書와 視聽覺資料 및 特殊資料를 生産·分配·運用하는 機關·團體와 研究調査者의 名簿·住所錄(名鑑)을 作成 供與하는데 있어서 例示의 內容을 말한다면, 出版者·發行所·都·小賣商社·團體·輸出入會社·各種關係機關·團體(文教部·UNESCO·圖書館協會·出協等)·各種學會·各種教育·文化·研究機關·團體(研究者·研究補助者·主要研究員·事務機構·特殊設備·現行研究事項·研究實績·特記事項等)·公共·大學·學校·特殊圖書館·廣告代理店 및 取扱業者·新聞社·雜誌社·官·民放送機關(可聽區域·呼出符號 包含)·科學者總覽(研究主題·進行題目總覽) 등을 作成하되, 이에다 그 名稱·略稱(電略表 包含)·代表者·創立年度·幹部陣容(組織機構狀況)·住所·電話番號·振替口座番號·會(職)員數·會則關係·出版種別(機關誌)·刊種別·事業豫算關係業績·圖書資料費豫算·藏書狀況·支部所在地 等の 各種事項을 包含시켜야 하는 것인 데, 이때에도 英文이 그것들과 더불어 併記된다면 思想과 文化의 交流라는 見地에서 불세 이의 寄與란 甚大할 것이다.

뿐더러, 書誌統整과 關係되는 法規 即 國內外의 圖書·圖書館·著作權·出版·輸送·交換 및 物品管理會計 等과 關連性을 갖는 各其 諸法規을 이에다 添付한다면, 더욱 理想的인 資料가 될 것이며, 또한 이들을 總括한 國內外의 年間出版經濟概觀을 紹介하는 것이 必要할 것이다.

(다) 그 다음으로 이들 資料生産에 關한 統計의 作成과 그 現況提示에 이어서, 그 資料源에 對한 書誌의 情報提供 Service에 關하여 論之한다면, 이는 主로 情報資料의 選擇과 收集이라는 面에만 局限시켜 論及하여 질 수 있을 것이다.⁽⁴⁰⁾

(ㄱ) 첫째로 圖書選定 乃至는 推薦事業과 이들 選定·推薦된 資料에 對한 目錄의 作成提供이라는 問題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같은 事業은 우리나라에서도 兒童圖書와 學校圖書館資料에 對하여 若干式 行하여지고 있으나, 外國에서는 廣汎하게 大規模의 積極性을 띄우고 이를 實施하여 오고 있는 것 같다. 말할 것도 없이 本事業은 本論의 前提로서 이미 屢述하여 왔듯이 洪水처럼 쏟아져 나오는 文獻資料에 對한 豫防統整의 立場에서 切實히 要請되는 것이다.

隣國 日本의 先例를 본다면 圖書選定 事業에 있어서 첫째로 그들은 日本圖書館協會를 通하여 圖書選定과 「選定圖書總目錄」(年·月刊)을 刊行하고 있다. 이는 專門學者, 圖書館專門職 및 學校教員等 50名의 匿名委員으로 構成되는 委員會가 週當 1回次, 公共·大學·學校·專門圖書館 및 公民館 等の 各級水準의 圖書館에 適合하는 優良圖書를 選定하여, 一般·青年·大學·高校·中校·國校生用別로 類分 表示하고, 그 結果를 「日本讀書新聞」에 掲載하는 한편, 本選定事業으로부터의 積極的인 受惠를 爲하여 參加하고 있는 豫約會員 圖書館에다 選定리스트를 發送하고, 그 現品을 割引價格으로 大幅의 購入함과 同時에 이들에 對한 目錄가 야드까지를 作成하여 會員圖書館에다 發送하여 준다고 하며, 또한 이와같은 事業

에서 들어오는 收入을 協會運營資金으로 補充하고 있다는 消息이다. 이러한 事業은 勿論 韓國圖書館事業의 하나로서 目下 着手 過程에 있으며, 이의 活潑한 展開가 期待되어 지고 있는 터이다.

둘째로는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의 圖書選定事業과 圖書推薦事業 및 이의 結果가 가져다 주는 圖書目錄의 編成提供을 들 수 있다. 本事業은 主로 第一線教師를 中心的인 委員으로 하여, 學校圖書館用 新刊圖書의 選定을 月當 2회에 亶하여 行하므로써 그 結果를 同協議會의 「學校圖書館 速報版」에 掲載하는 한편 「日本讀書新聞」에도 掲載한다. 그러나, 同協議會가 實施하는 推薦事業은 各地方學校 圖書館協議會에서 推薦되어 오는 圖書를 中央審査委員들이 다시 嚴選하여 十數點式 終局點인 推薦決定을 하여, 結果를 月刊誌 「學校圖書館」에 掲載하고 있다. 叙上과 같은 一連의 事業의 結果는 同協議會編인 「學校圖書館 基本圖書目錄」의 內實을 가져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日刊新聞의 新刊廣告欄을 훑어 보면 간간히 學校圖書館協議會選定 또는 推薦圖書云云의 P. R.가 되어 나오고 있는 것 같으나, 이들에 對한 學校圖書館의 「뉴스레터」나, 同「리스트」를 接해본적이 없는 것은 筆者의 情報에의 疏遠의 탓인 지도 모르겠거니와 這問의 實情은 如何한 것인지 궁금하다.

셋째로 兒童用圖書의 選定乃至는 推薦을 爲하여 日本産業經濟新聞社, 中學兒童福祉審議會 또는 兒童文學家協會等에서는 年例行事로서 圖書選定·推薦事業을 實施해 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없는 일은 아니다. 上記外에도 各種授賞作品 리스트들은 書誌統整에의 좋은 情報提

供을 爲한 資料가 될 것이다.

(2) 書誌類: 이는 本「카테고리」에 있어서, 資料源에 對한 書誌의 情報提供 Service에 도움이 되는 것 中の 典型的·代表的인 資料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全國 書誌·出版目錄類를 들 수 있을 것인데, 그 中에서 現在 第一 網羅的인 것은 日本國會圖書館編으로서 1948년부터 年次的으로 順次에 따라 發刊되고 있는 「全日本出版物 總目錄」이라 할 것이며 이는 納本制度를 通하여 同館에 納本되는 資料, 即 政府 및 民間刊行物を 爲始로 하여 視聽覺資料까지를 包含한 全國資料가 總網羅되어 있는 主要한 書誌統整資料인 것이다. 이 部類에 屬하는 것으로서, 過去에 出版된 것으로는 戰前에 있어서 納本事務를 管掌하고 있던 舊「帝國圖書館」이 1899年(明治32年)以後 1943年(昭和18年)間에 亶하여 同館에 受入된 總圖書에 對하여 刊行한 10冊의 「帝國圖書館書名目錄」과 「帝國圖書館報」에 收錄된 分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其他이 部類에 屬하는 것으로서는 東京 出版ニゴース社가 1950年以來 年次로 編刊하여 온 「出版年鑑」이 民間出版物만을 中心으로 收錄하여 오고 있고, 栗田書店이 「分類別 日本圖書總目錄」을 加除式으로 編刊하고 있으며, 解題附「東京堂出版年鑑」, 東京書籍商組合圖書總目錄(1893~), 1943年以後의 出版物을 包含하는 日本出版協會編의 「日本出版年鑑」 및 日本書籍出版協會編刊인 「日本統合圖書目錄」의 6部編과 同組合의 「出版年鑑」 등이 있다.

勿論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으로는 解放以前의 朝鮮總督府 圖書館의 「圖書目錄」, 今西龍氏의 손으로 解題된 同府의 「朝鮮圖書解題」, 舊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 時節

서부터 내려오는 同館의 藏書目錄, 戰爭前後에 亶하여 完成된 日人 前間恭作編인 「古鮮冊譜」3冊, 黒田 亮의 「朝鮮舊書考」, 東洋文庫의 「朝鮮本分類目錄」, 國立圖書館에서 現刊資料에 對하여 現在 刊行하고 있는 月刊「圖書 및 定刊物⁽⁴²⁾目錄」, 最高會議藏書目錄(冊子型)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新刊圖書目錄으로는 既述한바 있는 日本國會圖書館 編刊의 「納本週報」가 있고, 出版=뉴스社編刊인 旬間「出版=뉴스」, 및 同社의 季刊인 「新刊四季報」, 日本讀書新聞社 編刊인 週刊「日本讀書新聞」, 圖書新聞社 刊行의 週刊「圖書新聞」 月刊「讀書春秋」, 日本出版販賣株式會社의 「新刊月報」, 同社의 半月刊「日販通信」, 東京出版販賣株式會社의 月刊「新刊=뉴스」, 日本教科書圖書販賣株式會社의 半月刊「日教販通信」, 其他 各出版社 刊行의 單獨出版目錄 등이 있다.

그리고 이에 該當하는 우리나라의 것으로는 韓國出版協同組合의 編刊인 年刊「圖書目錄」이 現在 第5輯까지 나오고 있고, 大韓出版年鑑社 刊行의 「出版年鑑」, 小賣商備置用으로 一文社가 編刊하는 「加除式圖書目錄」이 昨年 6月30日 現在로 刊行된 分을 收錄하고 있으며, 其他로는 몇몇 出版社들이 單獨으로 小規模의 體制로 出版目錄을 新學期가 다가오면 發作的으로 一切히 放出하고 있다는 印象을 주고 있다.

그다음 專門書誌에 對하여 論之한다면, 日本科學書協會의 年刊「自然科學書 綜合目錄」과 工學協會의 年刊「全日本 工業書總目錄」 및 同社 月刊物인 「理工學圖書 = 뉴스」, 教育書協會의 年刊「教育書 總目錄」 등이 있고, 其他의 各主題部門別의

目錄들이 散在하나, 다만 重要的 研究資料로서 내놓을 수 없는 政府刊行物에 關한 것을 挿言한다면, 「日本政府刊行物 Service Center」의 月刊物인 「政府刊行物目錄」과, 日國會圖書館 支部圖書館編의 年刊物인 「官廳刊行物總目錄」이 있다.

여기에서 一括的으로 우리의 實情을 反省할때 納本에 關하여는 文敎部 出版課에서 「納本月(季)報」와 最高會議圖書館이나 國立圖書館에서 「政府刊行物 納本月(季)報」程度라도 나옴직 한것인데 情報에 어은고 맞인지는 모르나, 筆者는 아직 이들에 接해보지를 못한것 같다. 이와 같은 事情은 公報部가 新聞·雜誌 등에 對하여 그동안 發刊하여온 一覽表가 流布되고 있음이 散見되는 것이기 때문에 若干 例外가 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그러한 段階는 이제 止揚되어도 좋으리라 믿어진다. 換言하면 그러한 簡略한 list가 아니라, 既述한바 있는 ②의 (가), (나)에서 例示된 事項으로서 定期刊行物에 該當하는 事項들은 可能한 限度로 前示 公報部 list에서 具體化되어 半年刊 程度로 刊行하여 國內외의 各大學·研究所를 비롯하여 그것이 所要될 各機關에 다 配布하여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專門主題에 關한 現刊 書冊目錄으로서는 中央大學校 教育學科編인 「韓國教育目錄」의 嚆矢의인 刊行을 들 수 있을 것이며, 其後 몇몇 專門分野에서도 類似한 것이 刊行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索引類가 아닌지 筆者에게는 確實하지 아니하다. 如何든 如斯한 業績들은 吾國 書誌統整事業上 크나큰 寄與을 이룩하고 있는것임에 틀림없으나, 한편 이는 우리 專門職들이 할바 職分에 對한 機先

의 先制를 當한 느낌도 없지 않다. 앞으로 이 種 資料가 雨後竹筍格으로 續出되어 주었으면, 우리 民族文化向上을 爲하여 그얼마나 기꺼운 노릇이랴!

外國圖書의 輸入目錄 같은것 또한 마찬가지로, 各已 輸入商들의 奉仕的 自發的인 發刊이 切實히 要請되는 바인데, 近者에 이르러, 若干式 杜撰한것들이 나마 分配되고 있어서 多幸한 일이라 여겨지는 바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앞으로는 좀더 體制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勿論 그러한 資料를 作成하는 것은 人的·物的 및 時間的으로 餘分의 일 같이 여겨지며, 同時에 그러한 手苦를 하지 않더라도 物件만 잘 팔리면 그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問題가 달라질 것이나, 기왕 刊行하려면 正確히 또한 體制를 갖추어서 作成 配布되었으면 한다.

그다음에 古本에 對하여는 如何한가? 이에 關하여는 古書去來目錄을 聯想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古本의 去來景氣가 活潑하지 못한 탓인지는 모르되, 大大的인 古本市場에 關한 報道通信資料가 없는것 같고, 間或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單一部數의 目錄을 갖고, 여기 저기로 回覽시키는 程度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資料의 流通이란 期待할 수 없고, 이리하여 情報資料는 世上에 알려지지 않은채 한곳에서만 歲月을 보내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書誌資料 放出이 갖어오게 될 古本去來보다 現在의 우리 古本市場의 樣相은 훨씬 閑散하고, 그의 去來價格도 千差萬別(勿論, 이것은 古本이 지니고 있는 固有의 特性이기도 하지만)의 指數를 示顯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⁴³⁾

如何튼간에 隣國 日本의 現況을 一瞥한다

먼 거기에는 日本古書通信社의 月刊誌「日本古書通信」과 東京都 古書籍協同組合의 月刊「古書月報」, 東京 文生書院의 編刊인 部門別「古書目錄」 등이 流通되고 있어, 古書의 去來度를 促進시키고 있다는 點에 注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古書販賣目錄과의 關連에서 聯想할수 있는것을 몇가지 添言한다면, 稀書目錄乃至는 善本目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書影集이라든가, 古寫本, 自筆本, 古刊本, 初版本, 限定本, 手澤本, 등이 收錄되는 것이며, 좀더 나아가서 舉示한다면 禁止圖書目錄, 沒收本, 逸書目錄(散逸及 燒失分), 珍奇本 無著者及 匿名圖書目錄, 叢書類目錄, 個人著述目錄 및 어느곳에서 어떠한 資料가 展示되었는지도 記憶할 수 없을 程度로 頻繁히 있는 圖書展示 目錄의 累纂, 그리고 點本目錄과 船載目錄 등의 存在와 더 나아가서는 書誌資料交換에 依한 破污損·亡失資料의 補充乃至는 過不足한 資料의 相補의 契機를 주는 交換圖書目錄과 主觀性이 介在될 可能性이 있는 不用圖書目錄의 存在意義와 그의 流通이 書誌統整에 寄與하는바 價値性을 우리는 또한 잊을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其他 資料를 歐美의 것과를 包含시켜 一括的으로 概括한다면, 첫째로 「一般的인 資料」(Sources in general)로서는 Winchell의 Guide to reference books Wyer의 Reference work; Shores의 Basic reference sources; Schneider의 Handbuch der Bibliographie; Roberts의 Introduction to reference books; 天野敬太郎의 本邦書誌の 書誌; 彌吉光長의 參考圖書の 解題; 長澤規矩也의 支那書籍解題; 桂五十郎의 漢籍解題; 紀昀等の 四庫全書 總目提要; 四

庫全書 簡明目録; 加田哲二編의 「何を 如何に 讀むべきか」; 木村健康의 「教養文獻解題」; 新島繁의 「社會科學 文獻解題」; Grasel Arnim의 Führer für Bibliotheksbenutzer mit einer Zusammenstellung bibliographischer und enzyklopadischer Hilfsmittel...; Besterman의 A world bibliography of bibliographies and of bibliographical catalogues; Minto의 Referense Books; Barton의 Reference books; Hirshberg A subject guide to reference books; Hutchins의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Collison의 Bibliographies. subject and national; Hainsius의 Allgemeines Bücherlexikon; Internationale Bibliographie des Buch und Bibliothekswesens; Brunnet의 Manuel du libraire et de l'amateur de livres; British Museum의 Catalogue of printed books; Bibliotheque nationale, Paris의 Catalogue general des livres imprimes; Gesamtkatalog der Preussischen Bibliotheken...; English catalogue of books; Wilson의 U. S. catalogue乃至는 Cumulative Book Index; L. C.의 A catalog of books represeted by Library of Congress printed cards; A. L. A.의 Catalogs; Wilson의 Bibliographic Index; Book Review Digest; Catalog of reprints in series; Bowker의 books in print : an index to the Publisher's Trade List Annual(PTLA); Paperbound books in print; Textbooks in print; The Literary Market Place; Library Journal; Starred books from the Library Journal; American Book Publishing Record; Publisher's Weekly; Wilson Library Bulletin; A. L. A.의 Classics of the

western world; Subscription Books Bulletin; Dickenson의 The world's books; Graham의 Bookman's manual; Hackett의 Fifty years of best sellers; The Horn Book magazine; UNESCO의 Index Translation; Sonnenschein의 Best Books; The Virginia Kirkus Bookshop Service; L. C.의 U. S. Quarterly Booklist; Whitaker's Cumulative Booklist 및 The Bookseller 등을 들수 있을 것이며, 書評誌(Book-reviewing periodicals)로서 주로 美國의 것만을 들어 본다면, Saturday Review of Literature; Literary Supplement to the (London) Times; Nation誌; Atlantic Monthly; Harper's Monthly Magazine; Yale Review 등이 있다.

定期刊行物 選定資料로서는 A. L. A.의 Periodicals for small and medium-sized libraries; Ayer's Directory of newspapers and periodicals; Union list of serials in librar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 L. A.의 New periodicals; Farber의 classified list of periodicals for the college library; Cundiff의 Magazines for schools; Martin의 Magazines for school libraries 등이 있다는 것을 들수 있고, 零細短命資料에 對하여는 Vertical File Index를 들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各級 圖書館種에 照鑑하여 먼저 公共圖書館資料源에 對한 情報資料로서는 Wilson의 Standard catalog for public libraries가 있고, 大學圖書館資料源에의 模範的인 指針으로서는 Bertelan의 Books for junior colleges; Grace의 Books for Catholic colleges; Harvard Univ Library의 Catalog of the Lamont Library;

Shaw의 A list of books for college libraries; 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 and Secondary Schools의 The classified list of reference books and periodicals for college libraries; Wilson(L. R.)의 The Library in college instruction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學校圖書館과 어린이 圖書館에 對하여는 어떠한가? 첫째로는 A. L. A의 Basic book collection for high school libraries; Basic book collection for junior high schools; Basic collection for elementary grades; AAAS(Triple As)의 Books of the travelling high school science libraries; Cundiff의 Recommended reference books for the high school library; Wilson의 Childrens catalog; 및 Standard catalog 등이 있다.

끝으로 專門圖書館 資料源에의 指針으로는 ALA의 Hospital book guide와 Jones의 The hospital library 그리고 Special Library Association의 Technical book review index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앞으로 우리가 書誌統整事業을 推進시킴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敎示的 資料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上述하여온바 외에도 資料源에 對한 情報資料提供의 役割을 하는 新聞·雜誌 등의 定刊物에 對한 各種 Index가 있으며, 甚至於는 各種의 肖像畫, 挿畫의 所在를 指示하여 주는 Portrait Index 등까지 登場하고 있는데, 이에 對하여는 앞으로 나올 ㉔에서의 索引項을 說明할때 一括하여 論及하려 한다. (繼續)

註 (31) Larsen, Knud: National bibliographical services... Paris, UNESCO, 1953 亦參照. 遺憾스럽게도 筆者는 本書에 接하지 못하였다.

(32) 宇野慎三: 出版物法論. 東京, 巖松堂, 1921. p. 33 ff.

(33) The Columbia Viking Desk Encyclopedia, Vol. 1. New York. Viking Pr.. 1953. p. 287 및 Library of Congress: Annual Report of the Librarian of Congress for the fiscal year ending June 30, 1956. Wash. D. C. Gov't Print Off., 1957, p. 56 ff.

(34) 여기에서 文獻의 寫眞複製와 著作權의 問題가 提起되는 것이나, 이에 對하여는 豫定되어 있는 項目에서 論하기로 한다.

(35) Library of Congress, ibid.

(36) 日本出版ニユース社編: 出版年鑑 1952, 東京, 同社, 1952. p. 803 ff. 및 961, 그리고 國立國會圖書館法에 依한 出版物의 納入에 關한 規程(1949年 7月 5日 同館規程 第3號) 參照.

(37) 李廷煥: 新經濟學. 서울, 法文社, 1962. p. 1 ff. 및 Seligman, ed: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Mcmillan, 1954. Vol. 14, p. 356 ff.

(38) 甚至於는 出版物에 對한 廣告의 掲載量, 即 各日·月·年. 出稿量까지를 一定單位(cm)로 測定하기까지 한다.

(39) 日本出版ニユース社編, op. cit. 勿論 이런 程度로는 아직 滿足할수 없고, 좀더 充實化한 形式과 內容의 것을 世界各國이 競爭的으로 發刊할 수 있다면 그의 効用性이란 大端할 것이다. 그리

면 UNESCO는 이들 자료를 總網羅하여 世界的인 것으로 編纂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事業은 말과 같이 容易하게 成就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 (40) 協同購入이나 國際交換事業에 關係서는 別途로 言及된 것이다. 그리고 먼 나라 美國의 例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言及된 것은 主로 英國 日本의 例를 參考하였다. JLA 圖書館 핸드ブック. p. 252 ff. 參照. 前記資料를 大幅의으로 參照시킨 것은 우리나라의 藏書構成現況이 日書에 相當한 比重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 意義가 있다.
- (41) 日本圖書館雜誌는 이들을 月報에 다도 또한 掲載하고 있다.
- (42) 現在 國立圖書館에서는 解放以前 藏書에 對한 書冊目錄을 「리·푸린트」版으로 再版하고 있다.
- (43) 이는 單行本뿐만 아니라, 新聞이나 雜誌 등에 掲載되었던 教育分野 및 이와 密接한 關連性을 갖는 隣接分野와의 關連性을 갖고 다루어진 論文 乃至는 記事들까지도 收錄하고 있는데 이는 同校

教育科 Staff들의 努力과 그리고 Asia Foundation의 財政的 뒷받침으로 成就되었던 것이다.

- (43) 여기에서 생각나는 點은, 우리의 古本市場의 去來動向을 去來頻度率의으로 볼때, 價格이 中位의 것들은 去來가 活潑하나, 高價한 것과 低價의 것은 그 去來가 무척 緩慢하다는 것인데, 이에서 우리는 그러한 示唆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겨 진다.
- (44) Winchell의 Guide to reference books; Miller의 The book industry; Shuman의 How to judge a book; Haines의 Living with Books; 彌吉光長의 參考圖書의 解題 等を 參照할事. 여기에서는 앞으로 ⑤에서 展開되어질 內容이 미리 重複的으로 나오고 있으나, 例示上의 便宜를 爲하여 不得已하였다. 그리고 例示를 爲한 量的過多라는 點도 顧慮받은 것은 아니나, 앞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에 對한 그 어떤 示唆的인 意義라도 졌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들을 積極的으로 多量引用學示하여 보았다.

會 員 案 內

1. 個人會員

圖書館 또는 其他 讀書施設에 勤務하시는 분이나 圖書館學18學點 以上을 履修하신 분이면 누구나 本協會의 個人會員으로 入會 할수 있습니다.

會費: 年 200원 (郵票可)

※個人會員이 되면

① 本會定款 第15條에 依한 總會의 構成會員이 되고 發言權 衆決權 및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진다.

② 「도협월보」를 每月 無料로 郵送 받는다.

③ 本協會가 主管하는 實務講習會의 受講優先權을 준다.

④ 本協會長 名義로 會員證을 發給한다.

2. 團體會員

圖書館(室)이 該當(級別)會費를 添付하여 申請하시면 團體會員이 됩니다.

會費級別

A級, 年 5,000원(綜合大學校圖書館, 國立, 國會, 韓銀, 産銀, 其他 該當圖書館)

B級, 年 3,000원(單科大學圖書館, 軍機關圖書館, 道立, 私立, 其他 該當圖書館)

C級, 年 2,000원(市邑立圖書館, 初級大學, 其他 該當圖書館)

D級, 年 1,000원(學校圖書館, 其他 小圖書館)